

—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(2004. 1. 29, 법률 제7153)으로 영유아의 양육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,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 하였으며,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.
- 따라서, 늘어나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교사, 보호자, 시설 종사자 대표, 보육전문가 등이 보육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보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기능의 활성화 도모 (안 제4조·제5조).
- 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(안 제7조)

-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 (안 제9조)
-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·운영, 보육 관련 기초자료 조사·제공,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 도모 (안 제11조)
-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종사자의 인건비, 보육아동 급식비, 시설운영 관리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안 제14조)
-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5조)
-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방안과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임.
- 본 조례안 제5조 제4항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 라고 규정 하였는데

중앙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는 여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, 예산 및 보육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따라서, “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”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